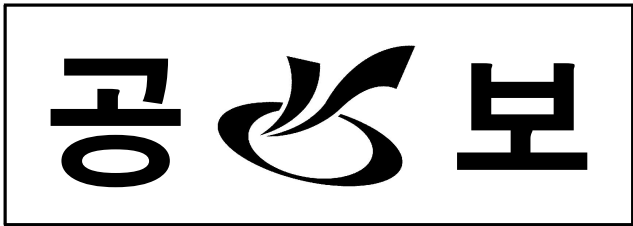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36호
2008년 5월 8일 목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88호 공시송달공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90호 신조공인공고 11

회							
람							

공	고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8. 5. 6 ~ 2008. 5. 20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명 (차량번호)	함인철외 4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건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5월 2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함인철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0-47 (12/3) 대릉빌라 6동 302호	인천83가 7281	봉인탈락	제10조제3항	
2	김만수	인천시 서구 가좌3동 224-2 하나아파트 502호	인천31구 1144	방향지시등(청색)	제29조제1항	
3	이신자	인천시 서구 가좌3동107-3 영화연립 A동 104호	인천35고 6019	HID전조등 설치	제34조	
4	김형수	인천시 서구 마전동 639 (4/2) 영남탑스빌아파트 107동 1904호	48러2584	HID불법 장착	제34조	
5	오명진	인천시 서구 가정1동 533-1 (16/2) 삼용아파트 B동 104호	86노3624	화물칸 격벽제거 및 측면 창유리 설치	제34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삭제 및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0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 (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 ☎ 032)560-40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사 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 개정
개 정 안	“ 별 지 참 조 ”
신·구 조문 대비 표	“ 별 지 참 조 ”
관 계 법 령 발 체	“ 별 지 참 조 ”
관 련 사 업 계 획	“ 해 당 없 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 당 없 음 ”
기 타 참 고 사 항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을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급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u>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u>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u>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u>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 별로 <u>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u> <신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u>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 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현행	개정안	비고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으로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한다.	5.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390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인신조 사유
-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08년 5월 19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연번	신조공인명	규격	인영
1	기획재정부일반회계인천서구수입징수관인	2.4cm ² X 2.4cm ²	
2	기획재정부일반회계인천서구채권관리관인	2.4cm ² X 2.4cm ²	
3	기획재정부일반회계인천서구재산관리관인	2.4cm ² X 2.4cm ²	